

지방분권 · 총강 · 경제부분 대통령 개헌안, 더 살펴보니

# 수도조항 신설 · 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 있게 신설됐다.

경제민주화 개헌안에는 '상생' 개념이 추가됐고, 주목을 모았던 토지공개념도 새롭게 명시됐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발전이 이뤄지면서 성장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도 지방분권 개헌안 구상으로 드러났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이같이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수도조항 신설 관련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헌법에 명시됐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총강에 들어간다. 전 정부에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부분 개헌에서 주목받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기능 분산 등 재배치 필요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돼 참여정부 행정수도 구상 '탄력'

토지공개념 관련, 토지 소유 · 처분 공공 이익 위해 적절히 제한 가능 경제민주화에 '상생' 개념 추가

지방자치 관련, '제2국무회의' 신설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나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국 수석은 토지공개념 명시 관련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강화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도 이목을 끌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지

<대통령 헌법개정안 주요내용 - 지방분권 · 총강 · 경제부분>

1 전문 및 기본권 분야	2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3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b>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 추가</li> <li>•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li> <li>• "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지방행정부" 명칭 변경</li> </ul>		
<b>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입법권 조례제정 "법령의 범위 안에서"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li> <li>• 자치사무 수행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위임사무 집행 비용은 국가 부담 신설</li> <li>•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 자치분권회 신설</li> <li>•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명시 및 주민 참여 권리 명확히 함</li> </ul>		
<b>헌법 총강 개정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조항 신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함</li> <li>•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퇴직 후에도 '공정, 청렴성'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시</li> <li>•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li> </ul>		
<b>경제조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li> <li>• 경제민주화 강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 "상생" 추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 소상공인 보호, 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li> <li>•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li> <li>• 소비자 권리 등 신설 소비자보호운동 → 소비자 운동 개정</li> <li>• 기초학문 장려의무 신설</li> </ul>		

<그래픽=뉴스1 제공>

지방분권 주제에서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으로 규정됐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

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 부분에서는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도록 했다. 이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이밖에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신설된다. 입법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과제 추진

인권친화적 법규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 6개

전북도는 분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공모에 따른 선정 결과 '인권친화적 법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은 공무원들이 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 효과분석 등 연구용역 과제를 직접 수행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 문제점을 파악,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직접 연구하여 실행력을 높일 뿐 아니라, 외부용역 발주 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의 능력을 활용하여 용역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용역시

행에 따른 예산낭비와 외부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왔다.

2017년에는 '119안전체험관 테마파크형 안전관광상품화 전략방안 연구 등 6개 용역과제'를 추진하여 3억 8천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최근 3년간 13개 과제 용역 직접수행으로 8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8년에 6건의 용역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예년 연 평균 3~4개 과제에 그친 것과 대비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6건이 추진되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외부 용역발주 시 소요되는 경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6개 과제는 공모신청된 용역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 및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아울러 용역 결과가 완료되는 10월 경에 연구용역 내용에 대한 실효성, 예산절감액,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2개 팀에게는 성과평가 가점,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여나갈 계획이다.

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 청 공무원들이 직접수행 연구용역 확대를 위해 많은 건수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남북 정상회담 내용 제도화”

문 대통령 "기본사항 다 담아 국회 비준 준비해야"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동의 얻을 필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어 합의사항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7년 10·4 선언

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도선관위 지방선거 콘텐츠 공모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전북'을 주제로 '지방선거 콘텐츠'를 공모한다.

초·중·고생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가 선거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림 형식(포스터,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등), 산문 형식("행복한 우리전북"의 7행시 작성) 2개 분야 중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한은 2018년 4월 13일까지이며, 전북선관위 홍보과(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9, 4층 홍보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오는 4월 18일에 발표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